
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

2026. 10.

공정거래위원회
기업집단관리과

I 제도 개요

-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, 여신편중 등 경제력 집중 억제에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*(이하 '상출집단'),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(공정거래법 제24조)

* ('26년 상출집단 지정기준) 자산총액 명목 GDP의 0.5%(12조 원) 이상인 기업집단

- 상출집단 소속회사(금융·보험사 제외)가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 → **제한대상 채무보증**

* 단,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상출집단에 계열편입된 회사는 지정일(또는 계열편입일)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 유예

- 다만, 산업합리화, 국제경쟁력 강화* 등과 관련된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→ **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**

* 민간투자사업(SOC), 해외건설, 수출입 제작 금융 등

II 전체 채무보증 현황 ['26. 5. 1. 지정일 기준]

- 올해 상출집단(47개)의 계열회사 간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2,000억 원으로 지난해(470억 원) 대비 총 1,530억 원(제한대상 600억 원, 제한제외대상 930억 원) 증가(325.5%)

- (제한대상) 지난해는 없었으나 600억 원 발생

- (제한제외대상) 지난해(470억 원) 대비 930억 원 증가

【 상출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현황 】

('25. 5. 1. 및 '26. 5. 1. 기준, 단위: 개, 건, 억 원)

연도	상출집단 수	채무보증 보유집단 수	보증건수	보증금액	전년대비 증감	연속 지정 ¹⁾	신규 지정 ²⁾	지정 제외
2025	46	2	2	470	-	-	-	-
2026	47	4	4	2,000	1,530 (325.5%)	930	600	-

1) 「케이씨씨」는 일부 상환하여 보증금액 감소(△30억 원), 「엘엑스」는 (주)엘엑스판토스가 (주)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채무보증(960억 원) 발생

2) '26년 신규 상출집단(2개) 중 「교보생명보험」은 채무보증내역이 없고, 「다우키움」은 신규 상출집단 지정 전 채무보증(600억 원) 발생

Ⅲ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

1.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

-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00억 원(1개 집단) 발생
- 연속 지정집단은 작년에 이어 제한대상 보증내역이 없으나, 신규로 지정된 집단(다우키움)에서 발생

【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】

(‘25. 5. 1. 및 ‘26. 5. 1 기준, 단위: 억 원, 건)

구분	기업집단명	2025년		2026년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연속 지정	-	-	-	-	-
신규 지정	다우키움 ¹⁾	-	-	1	600
합 계		0	0	1	600

1) ‘26년 신규 상출집단 「다우키움」은 상출집단 지정(‘26. 5. 1) 이전 채무보증(600억 원) 발생

*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. 다만,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의무가 유예됨

2.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

-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,400억 원(3개 집단)으로 지난해(2개 집단, 470억 원) 대비 930억 원(197.9%) 증가
- 신규 지정집단(교보생명보험, 다우키움)은 제한제외대상 보증내역이 없음
 - 연속 지정집단에서 채무 일부변제로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, 신규 채무보증이 960억 원 발생하여 총 930억 원 증가

【 상출집단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】

('25. 5. 1. 및 '26. 5. 1 기준, 단위: 억 원, 건)

구분	기업집단명	2025년		2026년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연속 지정	지에스	1	300	1	300
	케이씨씨 ¹⁾	1	170	1	140
	엘엑스 ²⁾	-	-	1	960
신규 지정	- ³⁾	-	-	-	-
합 계		2	470	3	1,400

1) 「케이씨씨」는 약정에 따라 사업운영 수익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보증금액 감소

2) (주)엘엑스판토스가 (주)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960억 원 채무보증

3) '26년 신규 상출집단인 「교보생명보험」, 「다우키움」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내역 없음

□ 제한제외(예외 인정) 사유는 ▲수출입 제작 금융(90.0%), ▲SOC(10.0%)

【 제한제외 사유별 채무보증 현황 】

('26. 5. 1. 기준, 단위: 건, 억 원, %)

제한제외 사유	기업집단명	건수	금액	비중
수출입 제작 금융 ¹⁾	지에스	1	300	90.0
	엘엑스	1	960	
SOC(사회간접자본) ²⁾	케이씨씨	1	140	10.0
합 계		3	1,400	100

1)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[보증인: (주)지에스글로벌 → 피보증인: (주)지에스엔텍], [보증인: (주)엘엑스판토스 → 피보증인: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]

2)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(A)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(A)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[보증인: (주)케이씨씨건설 → 피보증인: 미래(주)]

IV 파생상품 실태조사 결과

1. 조사개요

- (조사배경) 그간 채무보증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 여신 관련 보증에 국한되어, 총수익스와프(TRS) 등 파생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지속
 - 이에 따라 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」(이하 ‘고시’)를 제정(‘25. 4.23.)하고,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(‘26. 4.24.)하였고, 동 고시 규율대상인 총수익스와프(TRS), 신용부도스와프(CDS), 신용연계채권(CLN) 등 3개 유형의 파생상품에 대한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점검을 실시
- (조사대상) 4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‘26. 7. 31. 기준 유지 중인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(TRS), 신용부도스와프(CDS), 신용연계채권(CLN)의 거래규모, 건수 등 분석

【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적용대상 파생상품 】

파생상품 유형	내 용
총수익스와프 (TRS, Total Return Swap)	채무증권(사채 등)을 기초자산으로 하여, 실제 현금흐름(총수익)과 약정된 수수료를 교환하는 거래
신용부도스와프 (CDS, Credit Default Swap)	신용 변동(특정 기업의 파산·부도에 따른 채무의 완전불이행 위험을 이전시키고,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계약)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
신용연계채권 (CLN, Credit Linked Note)	신용연계증권(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,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증권)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

2. 총수익스와프(TRS)

□ (거래규모) '26. 7. 31. 기준 3개 상출집단*이 계열회사 간 총 수익스와프(TRS) 거래를 유지 중이며 거래금액은 1조 567억 원

* 「에스케이」, 「현대자동차」, 「DL」

○ 지난해와 동일한 거래 규모이며 9건 모두 신규 체결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만 유지중

【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현황 】

(단위: 개, 건, 억 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거래중인 기업집단 수	5	4	3	3	3
계열회사 간 거래건수	15	13	10	9	9
계열회사 간 거래금액	25,732	15,237	11,667	10,567	10,567

- 1) 계열회사 간 TRS 거래: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(기초자산발행자, 총수익매수자, 총수익매도자 등)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를 의미
- 2) 거래금액: TRS 거래의 계약금액(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)

□ (기초자산) 계열회사 간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*(9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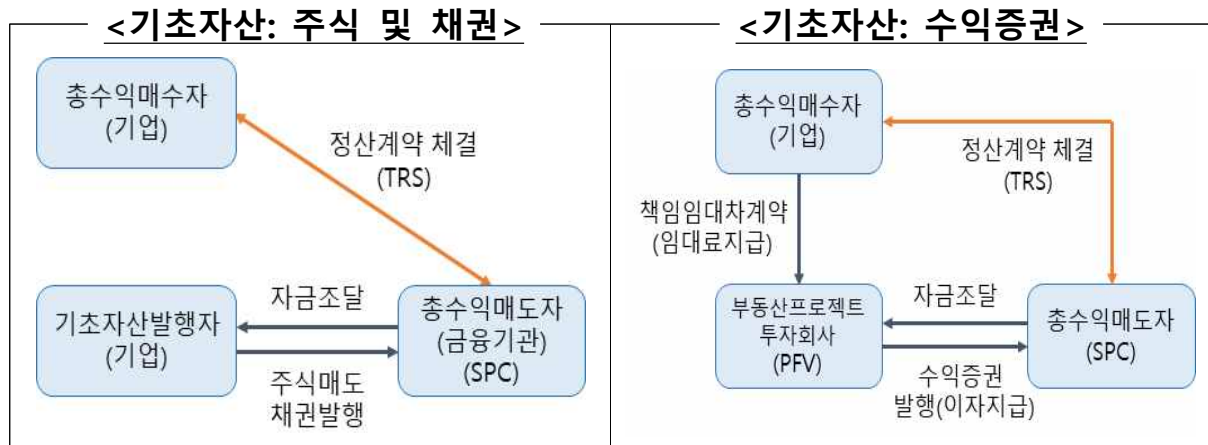
* 계열회사가 금융기관·SPC에 발행한 주식에 대해 다른 계열회사가 TRS 계약을 체결하고, 주가가 변동·배당 등의 손익을 인수하는 대신 고정수수료를 지급
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(고시 Ⅲ 2. 나. 1))

【 기초자산별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현황 】

('25. 7. 31. 및 '26. 7. 31. 기준, 단위: 건, 억 원)

기초자산	2025년		2026년	
	거래건수	거래금액	거래건수	거래금액
주식	9	10,567	9	10,567
채권	-	-	-	-
수익증권	-	-	-	-
합계	9	10,567	9	10,567



3. 신용부도스와프(CDS) · 신용연계채권(CLN)

- '26. 7. 31. 기준,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CDS, CLN 거래사례는 없음
- (CDS) 1개 집단(코오롱)이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만을 보유(2건, 3천억 원)
 - (CLN) 상출집단의 계열회사·비계열회사 간 CLN 거래 모두 없음

【 상출집단의 CDS 및 CLN 거래 현황 】

('26. 7. 31. 기준, 단위: 건, 억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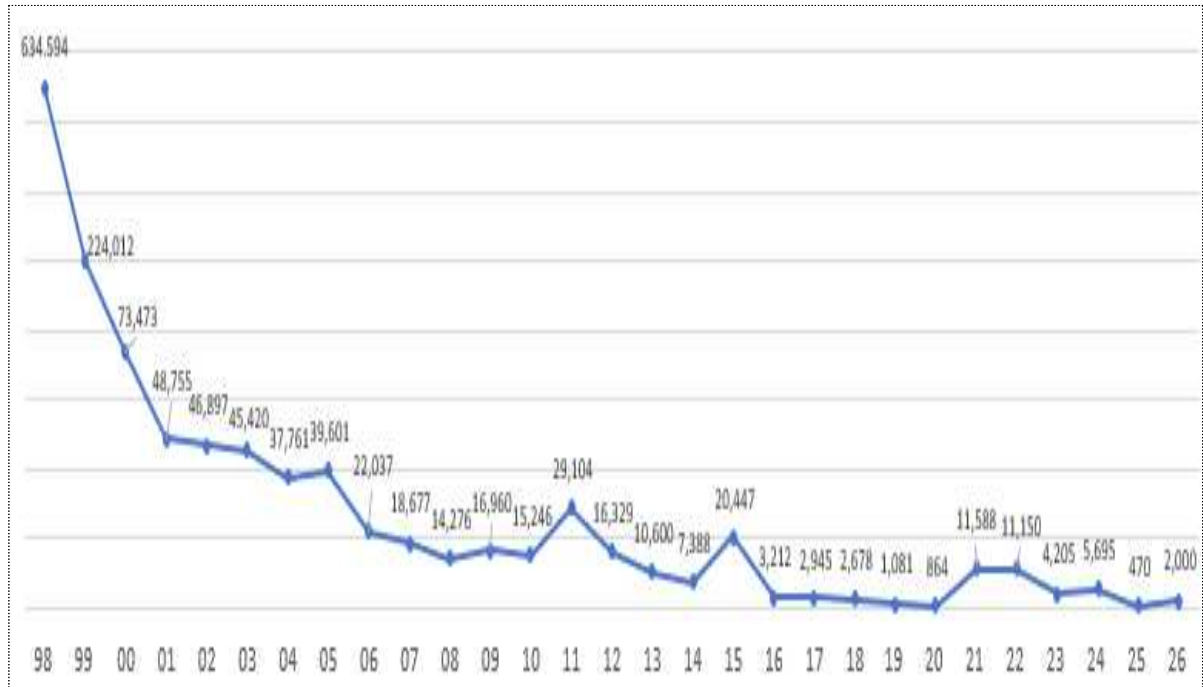
구 분	계열회사 간 거래		비계열회사 간 거래		전체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신용부도스와프(CDS)	-	-	2	3,000	2	3,000
신용연계채권(CLN)	-	-	-	-	-	-

V 평가 및 향후 계획

-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,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임
- '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고, 채무보증제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
【 '98년~'26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】

(단위: 억 원)



-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(TRS) 거래 규모는 작년과 동일, 신용부도스와프(CDS), 신용연계채권(CLN) 거래 사례 없음
 - 고시 시행에 따라 관련 신규 거래를 자제하였을 가능성
-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,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 부실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
 - 아울러, 채무보증 탈법행위나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

[참고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

참고
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

(2025. 5. 1. 및 2026. 5. 1. 기준, 단위: 억 원)

순위	기업집단명	2025년 채무보증금액			2026년 채무보증금액		
		제한대상	제한제외대상	합계	제한대상	제한제외대상	합계
1	삼성	-	-	-	-	-	-
2	에스케이	-	-	-	-	-	-
3	현대자동차	-	-	-	-	-	-
4	엘지	-	-	-	-	-	-
5	한화	-	-	-	-	-	-
6	롯데	-	-	-	-	-	-
7	포스코	-	-	-	-	-	-
8	HD현대	-	-	-	-	-	-
9	농협	-	-	-	-	-	-
10	지에스	-	300	300	-	300	300
11	신세계	-	-	-	-	-	-
12	한진	-	-	-	-	-	-
13	케이티	-	-	-	-	-	-
14	엘에스	-	-	-	-	-	-
15	씨제이	-	-	-	-	-	-
16	카카오	-	-	-	-	-	-
17	에이치엠엠	-	-	-	-	-	-
18	두산	-	-	-	-	-	-
19	셀트리온	-	-	-	-	-	-
20	네이버	-	-	-	-	-	-
21	중흥건설	-	-	-	-	-	-
22	쿠팡	-	-	-	-	-	-
23	에쓰-오일	-	-	-	-	-	-
24	DL	-	-	-	-	-	-
25	영풍	-	-	-	-	-	-
26	미래에셋	-	-	-	-	-	-
27	현대백화점	-	-	-	-	-	-
28	효성	-	-	-	-	-	-
29	하림	-	-	-	-	-	-
30	부영	-	-	-	-	-	-
31	한국엔컴퍼니그룹	-	-	-	-	-	-
32	장금상선	-	-	-	-	-	-
33	호반	-	-	-	-	-	-
34	케이씨씨	-	170	170	-	140	140
35	에이치디씨	-	-	-	-	-	-
36	SM	-	-	-	-	-	-
37	DB	-	-	-	-	-	-
38	케이티앤지	-	-	-	-	-	-
39	코오롱	-	-	-	-	-	-
40	넥슨	-	-	-	-	-	-
41	두나무	-	-	-	-	-	-
42	교보생명보험	-	-	-	-	-	-
43	엘엑스	-	-	-	-	960	960
44	오씨아이	-	-	-	-	-	-
45	넷마블	-	-	-	-	-	-
46	세아	-	-	-	-	-	-
47	다우키움	-	-	-	600	-	600
-	이랜드	-	-	-	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(26.5.1.)		
	합 계	-	470	470	600	1,400	2,000